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6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정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훈련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를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생략)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라.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일반적인 순직에 비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비교>

구분		순직	위험직무순직
대상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 재직 중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제1호~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유족연금	·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 + 5~20%	·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43% + 5~20%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24년 : 132,480천원)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24년 : 244,840천원)

현행법 제5조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2호는 소방공무원이 ①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②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¹⁾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

<공무원 순직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찰	순직	13	15	18	13	16
	위험순직	5	1	3	1	-
소방	순직	7	5	20	12	16
	위험순직	8	4	3	1	3
경찰·소방 외	순직	35	41	63	37	46
	위험순직	1	4	2	-	2

자료: 인사혁신처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등을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요건이 되는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²⁾ 사실상 소방공무원의 모든 직무상의

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생략)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11. (생략)

2)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활동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은 재난·재해현장과 관련성이 적은 활동을 포함하여 소방공무원의 모든 직무상의 활동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 12. 26.>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현행법 제3조제4호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³⁾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모든 직무상 활동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는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을 비롯하여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위임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4⁴⁾에 따른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같은 직무상 활동들에 대해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8. (생략)

②·③ (생략)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따르더라도 개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활동을 대부분 포섭할 수 있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해라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직무로 보기 어려운 행사 근접대기, 소방시설 오작동 조치, 방송제작·촬영 지원 등의 활동까지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정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체계적 문제가 있으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